

제29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수정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권 수 정
(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권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성평등 의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주요정책과
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국민 서비스 관련 성차별 개
선과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서울시 역시 시정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등 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대시민 음성안내 서비스 등은 성별영
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사·공공기관 대시민 음성 안내 서비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안내음성이 특정성별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개의 공공기관 대시민 음성서비스
중 음성안내가 여성으로 운영된 경우 32건, 남성은 1건,
남·녀 모두 선정된 곳은 단 2건에 그쳤습니다.

대시민 음성안내 서비스는 안내자의 성별, 안내 내용
등에 따라 성평등 인식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은 성별 역할기대 인식에도 영향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준 등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서울 시장과 서울시 소속기관·산하 공공기관 등의 장이 성평등 관점에 따라 음성 등 안내방송을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배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관점에 따른 기관 운영과 기관장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